

—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2001. 8. 1일부터 구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있어 현재 운용중인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.

3. 주요내용

【 조항신설 】

-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같다(제9조)
- 1인 2종목이상 신청시 사용료 할인(제10조제5항)

【 내용변경 】

- 생활보호대상자 ⇒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제10조제2항)
- (별표1)
 - 수영장 사용료에 단체회원사용료 추가
 - 사용일수(월~토) ⇒ 사용일수(월~일)
 - 용어의 <정의> 추가

4. 참고사항

-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

5. 검토의견

- 금년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

-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1인 2종목이상 신청시에 할인제도를 도입하고
- 수영장 사용료에 단체회원 사용료를 타조례와 같이 신설하되 사용일수(월~토)를 사용일수(월~일)로 조정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현실적인 개정안임.
- 제9조(사용허가)중 국민생활관 시설을 “이용”하고자 하는 자는 “사용”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함이 바람직함.